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5. 15

내무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 '92. 5. 4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2. 5. 12

라. 상정일자 : '92. 5.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조례상의 중복성 어구를 피하고 중요물품 대상범위를 축소하며, 불용품의 처분시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감정기관의 감정을 의뢰토록 조치함으로써 감정수수료의 절약과 동시 예산 절감을 기하게 함.

나. 주요골자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불용결정후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시 장부상 취득가격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중복성 용어를 삭제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것은 감정수수료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 성

불용품 매각시 감정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매각 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가격을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중복성 어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함.

(찬성자 : 참석위원 전원)

나. 반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첨부

가. 개정조례(안)1부

나. 신규조문대비표1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2항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의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략)</p> <p>② 분입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 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 및 정수물품</u>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에 "<u>중요물품</u>" 및 "<u>정수물품</u>"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략)</p> <p>②</p> <p>.....</p> <p>.....</p> <p>정수물품에</p> <p>.....</p> <p>..... 정수물품</p> <p>.....</p> <p>③~④ (생략)</p>